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이 범 팔	일본명	
	한자	李範八	이명	
출생일자		1866년 3월 8일	사망일자	1919년 1월 22일
본적	京城府 壽松町 97			
1904년 이전				
주소 경력	1866. 3. 8	이건하의 첫째 아들로 출생 (조선귀족열전, 202쪽; 전주이씨 광명대군파 족보)		
	1895. 5. 3	왕태자궁 좌시종관 (승정원일기, 1895년 5월 3일)		
	1895.10.16	산릉 위원 (관보, 1895년 10월 19일)		
	1899.6.28~10.3	경릉령 (관보, 1899년 6월 30일, 7월 6일, 10월 5일; 宮內府來文, 29, 30, 33)		
	1902.8.12~ 8.13	비서원승 (관보, 1902년 8월 10일, 15일; 궁내부내문, 77)		
	1904년 ~ 1945년			
	1904. 4.25	宗正院卿 (고종실록, 1904년 4월 25일; 관보, 1904년 4월 28일; 조선귀족열전, 202쪽)		
	1904. 5. 1	종정원경 사직상소 (관보, 1904년 5월 3일)		
	1913.12.20	이건하의 남작 작위 습작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월 12일; 매일신보, 1913년 12월 23일)		
	1919. 1.22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2월 10일; 조선귀족이력서, 66쪽)		

## 조사 내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 1) 남작 작위 습작

1913년 12월 20일 아버지 이건하의 남작 작위를 습작함.

▶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1월 12일.

“大正二年十二月二十日 襲爵被仰付 故男爵李乾夏相續人 李範八”

▶ 『매일신보』, 1913년 12월 27일, 「襲爵辭令交付式」.

“故 남작 이건하씨의 家督 상속인되는 이범팔씨에게 대하여 습작의 天命이 있음  
은 이미 보도한바 26일 경무총감부에서 該氏에게 대하여 습작사령 교부식을 행하  
였는데 該氏는 금년 48세인바 진사, 경릉참봉, 비서원승, 종정원경 등을 역임하고  
종2품의 位階가 있다더라.”

### 【참고사항】 습작과 관련한 절차

- 출전: 「조선귀족령」(皇室令 제14호, 1910년 8월 29일) 중 ‘습작’ 관련 조항(발췌).

“제10조 爵은 家의 상속인인 남자로 하여금 이를 襲하게 함.

제11조 爵을 襲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의 때로부터 6개월 내에 宮內

大臣에게 相續届를 제출 할 것.

전항의 届出있는 때에는 궁내대신은 勅許를 거쳐 襲爵 辭令書를 交付함.

제12조 襲爵은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함.”

### 2) “天恩浩大”라는 휘호

▶ 『매일신보』, 1913년 12월 27일.



습작사령 교부식이 보도된 기사와 함께 ‘하늘[천황]의 은혜가 넓고 크다(天恩浩大)’라는 휘호가 게재됨.

### 【참고사항】 작위 세습

1919년 2월 20일 이범팔의 아들 이완종(종5위)이 다시 작위(男爵)를 습작함.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2월 25일.

“大正八年二月二十日

襲爵被仰付 故男爵李範八相續人 從五位 李完鍾[이범팔의 첫째아들 - 작성자]  
(二月二十日官報)”

- 출전: 『조선귀족이력서』, 66쪽.

“大正八年二月二十日 李完鍾 襲爵”

이범팔은 수작자 이건하의 아들로 1913년 11월 7일 남작이었던 이건하가 사망하자 12월 20일자로 사자(嗣子)로서 작위를 습작하였고, 이범팔이 사망한 이후 작위는 다시 사자(嗣子) 이완종에게 습작되었다. 조선귀족령에 의하면, 습작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었다. 이범팔이 그의 아버지 사망 후 약 50일 만에 일본 정부로부터 습작 사령서를 교부받은 것은 상속신고서 제출이라는 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습작에 즈음하여 일본 천황의 덕을 기리는 휘호 “천은호대(天恩浩大)”를 매일신보에 게재했다. 그의 이러한 습작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범팔의 습작행위를 <특별법> 제2조 7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2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